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マロゴオル Mad eAnSe.com Made early sold com experience early sold com early sold compensation early sold compensat

2022/3/30 통권 1564호

CEO 에서이 - 이하익원정

CEO는 강한 심력의 소유자다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용·2022년3월3일(수) • 주간제13호 • 통권

제 1 5 6 4 호 •

징이

법인

출연재산

보 고

서

기 한

연 장

구목료

월30000원

부유층의 다주택 중 하나를 선양도 후 증여·상속할 까. 선증여 후 5년 뒤 양도할까의 비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 올해부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
-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 하된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수취한 세 금계산서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잉여금 이익배당이나 무상주 배당의 종합소득 과세여부 〉

배당 개념, 원천	개념설명과 절차 등, 종합소득과세여부
이익, 잉여금 분배	현금배당 → 배당소득 합산 + 총액화가산(11%), 배당세액공 제(11%) 적용
이익잉여금 자본 전입	이익준비금, 이익적립금 등의 무상증자, 주식배당 → 배당소 득에 합산 + 총액화가산, 배당세액공제 적용
의제배당	주식소각, 자본감소 중에서 ① 자기주식소각익(2년내 자본 전입시) ② 취득가액 초과하는 자기주식소각익 : 과세
배당처분액	법인세 신고서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시 "배당"으로 인정된 항목(주주귀속 금액임)
수익분배금 성격	법인 간주단체, 공동사업소득금액 중 출자비율로 인한 분배금: 배당소득 합산
주식발행 초과금	무상증자 가능, 배당소득에 합산 안됨
감자차익, 합병차익	주주의 자기자본이나 자본잉여금의 계정변경 : 배당과세안됨
기타자본 준비금	이익· 잉여금 관련 준비금 아님(재평가적립금): 배당과세안 됨
이월결손금	① 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 후 초과액을 배당소득 으로 과세함
상계	② 자본잉여금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면, 배당소득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므로 불리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u>안건조세정보</u>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3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4호 / 주간 13호

2022. 3. 30.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워·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잉여금 이익배당이나 무상주 배당의 종합소득 과세여부	πνΙ				
긴 급 시 사 해 설	부유층의 다주택 중 하나를 선양도 후 증여·상속할까, 선증여 후 5년 뒤 양도할까의 비교	2				
C E O 에 세 이	CEO는 강한 심력의 소유자다					
세 무·회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차량렌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문의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6 7				
눈에 맞 는 절 세 미 인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 제도 보완 대책	10 11				
직장인Survival	짜증을 통제하는 8가지 감정 관리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부가-4175, 2021.09.16)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5462, 2021.06.29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경정청 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13				
세 무 정 보	- 올해부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16				
회 계 정 보	-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33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1				

신 직 원 코 너

부유층의 다주택 중 하나를 선양도 후 증여 · 상속할까, 선증여 후 5년 뒤 양도할까의 비교



박유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응인외계사 · 성영약박사(마케팅소세진탁, 외계성영약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 팅

다주택 부유층의 주택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 양도자는 실제 양도가에서 본인취 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실제 양도가가 15억원이고 당초 취득원가가 5억원인 경우, 양도이익 10억원(=15억 - 5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억원(10년 보유하면 20%)를 빼면 8억원의 양도소득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면양도세액은 약 3.3억원이 된다. 잔여재산 11.7억원의 상속세도 약 4억원이 되어 총 세금은 7.3억원 정도가 된다. 이에 대응하여 가족 등에게 먼저 증여 후에 양도하는 여러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당초 취득가 5억워, 공시기주시가 10억워, 실제양도가 15억워, 보유기간 10년

수증받은 자	선증여 후 5년 내 양도인 경우의 비교(5년 후는 정상계산)			
구등본문 시	증여세	증여세 양도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가 10억원 - 10년	증여자 본인 양도로 계산 :	7천만원 + 2.98억원 =	
nj O 2J	단위 공제 6억원	15억 - 5억 - 증여세 7천만원 -	3.68억원	
배우자 	= 4억원의 증여세는 7	2억(장기보유공제 20%) = 7.3	(배우자 상속세는 별	
	천만원	억원에 대한 양도세 : 2.98억원	도)	
	증여가 10억원 - 10년	본인 양도세로 계산 : 15억 - 5	조러 비 그 그드러이 그 아	
자녀	단위 5천 공제 = 9.5억	억 - 증여세 2.25억 - 2억(장기	증여세 2.25억원 + 양	
1인 단독	원의 증여세는 2.25억	보유공제율 20%) = 5.75억원	도세 2.26억원 = 총	
	원	의 양도세 2.26억	4.51억원	
	각 1인 증여가 5억원 -	본인 1인의 양도세로 계산 :	조선세 1 6 연인 + 아트	
자녀	10년 단위 5천공제 =	15억 - 5억 - 증여세 1.6억원 -	증여세 1.6억원 + 양도	
2인 균등	4.5억원의 증여세 8천	2억(장기보유공제율 20%) =	세 2.56억원 = 총 4.16	
	만원×2 = 1.6억원	6.4억원의 양도세 2.56억원	억원	

특수관계자	증여가 10억원 - 친		수증자 증여세 2.27억
–	족증여 1천만원 공제	수증자의 양도세 15억 - 10억 =	원 + 양도세 1.92억원
증여 5년 후	= 9.9억원의 증여세	5억원의 양도세는 1.92억원	= <u>4.19억원 ⑦</u> (5년 후
양도	2.27억원		양도 정상거래)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제101조 제2	보이이 지적아드레 1드어 드어	수증자 세금 합 4.19억
경우	항의 부당행위계산 규	본인의 직접양도세 15억 - 5억	원이 본인 직접양도세
(실소유권 문제)	정 적용 : ⑦와 ⑭ 중	- 2억(장기보유공제율 20%) =	3.31억원보다 크므로
	큰 세금 적용	8억원의 양도세 <u>3.31억원 ()</u>	4.19억원으로 함
자녀증여 ·	증여가 10억원 - 5천	자녀의 양도세 15억 - 10억 = 5	세그 하게 4 17어의
' ' - '	공제 = 9.5억원의 증		
5년 후 양도	여세 2.25억원	억원의 양도세는 1.32억원	(정상거래와 비슷)
본인 양도 후	15억원 - 양도세 3.31	본인의 직접양도세 15억 - 5억	양도세 3.31억원 + 증
세후잔액	억원 = 11.69억원의 증	- 2억(장기보유공제율 20%) =	여세 3.1억원 = 총 6.31
현금증여	여세는 3.1억원	8억원의 양도세 3.31억원	억원 세금
사망 후	상속세:기초공제,가족	공제 등 모두 다른 재산에 적용	상속세는 재산규모에
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이므로 공시가.	따라 3~5억원	

◈ 참고 법령(소득세법)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 영 진 코 너

CEO는 강한 심력(心力)의 소유자다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벌써 춘삼월이다. 풋풋한 청춘의 계절이다. 청춘은 변화에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변화를 사랑한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의 자서전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에서도 변화에 대한 불굴의 뜨거운 가슴이 긴요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것이 청춘의 뜨거운 가슴이다. 변화와 도전과 용기가 생리적으로 젊은이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정직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는 이들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나이와 무관하고 성별조차 초월한다.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CEO는 항상 뜨거운 가슴을 지닌 청춘이다. 그래야 바른 지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간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경제학계의 거장 알프레드 마셜도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 학문과 세상을 가치있게 변화시킨다고 했다. 뜨거운 가슴없는 지식은 살생을 범하는 칼과 같다. 80년대 중반 인텔은 메모리사업에서 일본과 경쟁하여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그리고 경쟁사들과 법적문제로 수년간 혼란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CEO 앤디그로브의 리더십을 신뢰했던 것은 그의 무한한 애사심과 순수한 정렬이었다. 그래서 성공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텔은 메모리 칩 생산을 과감히 접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부문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대변신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 앤디그로브의 애사심과 선하고 강렬한 정렬! 그것이 대세를 바르게 판단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 인자만이 사람을 사랑도 미워도 할 줄 안다." 공자 말씀이다.

실명이라는 역경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겨낸 강영우 박사의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도 고 귀한 증언이다. 비합리적인 고객은 물론 억지쓰는 주주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CEO에게 강한 심 력을 키우고 지니는데 긴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선 강영우 박사 프로핔을 소개하는 것이 긴요하다.

194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재학중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한 후 굳은 의지로 극복, 세계적인 재활의 귀감이 되었다. 1972년 8월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했다. 3년 8개월만에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1976년 4월 한국 최초 맹인박사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중3영어 교과서(교학사)에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2000년, 2001년 미국저명 인사 인명 사전, 2001년 세계저명 인사 인명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2001년부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다.

강영우 박사의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

- 1.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 2. 당신이 선행을 하면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선을 행하라.
- 3. 당신이 성공을 하면 그릇된 친구와 원수도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하라.
- 4. 오늘 좋은 일을 해도 내일이면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라.
- 5.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라.
- 6. 대의를 품은 이가 졸장부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크게 하라.
- 7.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다. 그러나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라.
- 8.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탑을 계속 쌓아 올려라.
- 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라.
- 10.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이로 물려 뜯기고 발로 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차량렌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에서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렌트 하려고 합니다.

<사례1>

보증금 200만원, 월 렌트료 350만원

렌트기간: 22/01/17~22/02/17 (비용지급: 1/20)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용 완료 후 2/17 반납 시점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업체에서 차량 렌트 비용 중 50% 선수 요청. 나머지 비용 50%는 반납 시점에 지급 예정 렌트기간: 1/24~1/31 (선수금: 1/20일 지급, 잔금: 2/10 지급)

이 경우 하기 방법 중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 선수금 세금계산서 + 잔금 세금계산서

or - 거래종료시점에 총 금액 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용역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된 니다. 따라서 역무 완료시점인 2/17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데, 공급시기 전 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면 대금 수수시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선수금 지급일인 1/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선수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두가지 방법이 모두 세법상 적법한 방법이므로 선택 적용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홈텍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면세사업자라고 확인 되는데,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했다 하더. 라도 매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문의

저희가 늘 거래하는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회사를 새로 개업하였 습니다.(A와 B는 같은 회사의 계열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A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B업체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 었습니다.

대금은 A업체로 입금하였으며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B업체 사업자 번호로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신고 후에 알게 되어.

업체에서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겠다며 1월자로 A회사 + . B회사로 - 하여 돌린다 고 하시는데, 신고가 다 종료되었고 분기가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해야 가산세가 적 용되지 않으므로 11월 거래분에 대해 A업체가 1월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당사는 면세법인입니다(출판사). 상대방은 일반법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책을 판매해와서 면세계산서만 발행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책을 인용하여 받는 비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 를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으로 공 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이 더 타당하다고 판 단됩니다.

 $2022 \cdot 03 \cdot 30$ www.eAnSe.com 7

경리인코너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 제21조는 법인이 지출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상쇄되거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아 회수되는바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애초부터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도 있는데,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는 매입세액의 경우까지 손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좀 억울한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못하는 매입세액 중 손금에 반영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 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직접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해당 승용차의 취득원가 및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반영된다.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22601-1300. 1991.07.0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 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접대비 등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 서는 공제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접대비 등에 포함 시켜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한도초과의 경 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된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분도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전세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바(부가령 제71조 6호), 거래징수당한 임차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차용역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산 입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법칙 §11 2호)하고 있는데, 실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 22601-2319, 1985.7.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 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계산 서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뒐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분		세정지원 대상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 도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	2그룹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 10	3그룹 · 기타	평생직원교육학원, PC방, 오락실 ·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 지 · 안마소, 영화관 · 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교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기준

78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 장애 인 · 60세 이 상인 근로자 인 경우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그외	×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구택 유형별 종합부동산 제도 보완 대책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① 상속주택	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 · 특별자치시(읍 · 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②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③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사 사용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

1.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주식평가액 = max(1주당 순자산가치의 40% + 1주당 순손익가치의 60%,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 max(1주당 순자산가치의 60% + 1주당 순손익가치의 40%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2. 예외적인 경우(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 평가)

- ① 상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 사업 개시 전의 법인
- ③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④ 휴업 · 폐업 중인 법인
- ⑤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⑥ 주식 등의 가액의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① 법인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 내인 법인



짜증을 통제하는 8가지 감정 관리법

1) 미리 예방하라

감정은 결코 이유 없이 폭발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원인도 있고, 반복되는 패턴도 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듯이, 내가 어떤 이유로 짜증을 내는지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2)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불쾌하고 짜증나는 상황일 수록 감정 표현을 최대한 늦추자. 1분, 아니 때로는 10초만 늦춰도 된다. 사실은 크게 심호흡 한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짜증날 때일수록 참는게 약이라는 말을 되새기자.

3)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옆 차량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 들 때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해보자.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모든 행동에서 선의를 읽어라.

4) 혼자 갇혀 있지 말라

오래 혼자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읽기가 어려워진다. 상황이 자기 본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짜증이 날수 있고 작은 상황에도 민감해질 수 있다.

5) 에너지 출구를 마련하라

짜증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폭발하는 감정이다.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히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 각종 스포츠나 적절한 취미 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짜증 =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버려라

잘못된 상황에서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도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표현을 어떻게 완곡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익혀라.

7)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라

누군가로 인해 짜증이 난다면 어른이 아이를 보는 느낌으로 그를 바라보라. 돈에서든, 외모에서든, 인격에서든 그보다 나은 내 장점에 집중하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수취한 세금계 산서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부가-4175, 2021.09.16

▮질 의

-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 연수취하는 경우로서
-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6.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80, 2017.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 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 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058, 2021.06.29

▮질 의

- ○○○○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 · 운영을 허가받은 종교단체로
- 교인과 그 가족, 일반인들에게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질의요지

•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 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5462, 2021.06.29

▮질 의

• 퇴직자가 최종 퇴직이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한 중간정산 퇴직금 의 범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

진수하여야 하는 것인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952, 2021.07.07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상속세및증여세법 §54 ④3에 따라 순자산가치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 10% 보유 중임

질의내용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 10%이상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 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방법으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에 가산하는 토지, 건물 등의 평가차 액이 있을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2020-자본거래-2616(2020.7.6.),서일 46014-10200(2001.9.19.),재재산-1494(2004.11.10)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 워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법인 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지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천 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 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 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집중… 12억원 집 보유세 426→325만원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 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로 했다.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은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격안'에 따르면 이번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 1가구 1주 택 수요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표 산정 때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기준보다 101만원 적어진 325만원으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적용되는 것.

재산세는 공기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 세 증기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신규 과세대상 6만 9000명의 과세가 차단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지난해와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1억 원에서 1억5800만원이 오른 12억5800만원이지만 세금 부 담은 101만원 줄어든 326만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 국세청, 2022. 3

-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 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 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 2.까지)해야 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 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 말을 제공합니다.
 -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차 교육(4, 1,) | 접수: '22, 3, 21,~3, 30, 2차 교육(4, 8,) | 접수: '22, 4, 1,~4, 6,
- □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

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 올해 4.30.은 휴일로 5.2.까지 제출

|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

신고의무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④ 결산서류 등 공시⑤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⑥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⑦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이행	종전	3월 말	4월 말
기한	현행	4월말	

- □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 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 인 공익법인
④ 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 □ (지정신청)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 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

| 공익법인 지정·고시 절차 |

비영리법인 등	신청 ⇒	국세청 (관할세무서)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고시)

•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관할세무서 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합니다.

|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일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21. 10. 12. ~ '22. 1. 10.	'22. 1. 11. ~ 4. 11.	'22. 4. 12. ~ 7. 11.	'22. 7. 12. ~ 10. 11.
지정·고시	'22. 3. 31.	'22. 6. 30.	'22. 9. 30.	'22. 12. 31.

-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 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 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기관 변경 |



[남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결산서류 공시, ③의무이행 여부 보고, ④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 (서비스 내용)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

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 (예시)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공익법인 유형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① 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0	0	0	0
②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 법인(법인령§39①2.다)	0	0	×	×
③ 부동산,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	0	×	×	×

-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 □ (신고도움 확대)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 (기존 항목)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 ∘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1차	2차
교육 내용	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 출연재 ③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 ④ 공익법	
진행 방식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의 방식
교육 일정	4.1.(금) 10:00~13:00	4. 8.(금) 10:00~13:00
신청 기간	3. 21.~3. 30.	4. 1.~4. 6.
신청 방법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 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일반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 공익법인이란 (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사업유형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세법\$24②1호의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⑥ 법인세법 시행령§39①I호 따른 공익법인(종전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종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①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 사내근로복지조합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 의 경우 과세)
-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 ·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제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78 ③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78 ⑪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 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서 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 ⑤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 와 함께 10년간 보존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②, §78 ⑤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 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출연재 산) × 0.07% ② 100만 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78 ⑤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 (제출) 감사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78 ⑩	•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①,② 중 큰 금액 ① (A×B÷C)× 0.5% A: 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 좌 미개설 기간 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 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 법인, 학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법인령 §39⑥ ·§38⑨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 (가)-(라), (바))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당연기부금단체[법인 령§39①(1)(가)~(라)]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령 §39⑤	•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 (가)-(라), (바))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의 경우 명단공개 ・지정고시단체[법인령 §39①(1)(바)]의 경우 지정 취소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기부금영수 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법법 §75의4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 표 등 자료 제출 의무	법법 §120의3, 법법 §121, 법법 §75의 8, 부법 §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1), 상증령 §38	•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 3 년 이후 사용중단 금 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4)(5),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2)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 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 내 30%, 2년 이내 60%)×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3)(5),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1)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 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의사용금액 운용소투금액 •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 §37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 §48②(2), 상증령 §37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 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 등의 5% (10%, 20%) 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 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 §49, 상증법 §78④	 '96.12.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5%~20% 이하: 3년이내('99.12.31.) 처분 '20% 초과: 5년이내('01.12.31.) 처분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 가×5%(부과기간: 10 년)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48⑨, 상증법 §78⑦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 5%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 §48②(7), 상증법 §78⑨(3)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 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 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 는 공익법인 -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10% * 단, 운용소득 미달사 용가산세와 비교하 여 큰 금액만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상증법 §78⑥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 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 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⑩, 상증법 §78⑧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광고·홍보 금지	•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 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③, 상증령 §3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 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중여세 부과 무상사용 줄연재산가액에 부과 나은 가액으로 사용 장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상증법 §48②(8), 상증령 §38⑧(2)	•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 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 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 산가액·이익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②(8), 상증령 §38⑧(1)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 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

구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 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 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 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제외 법인	-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4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 □ 공익법인 지정신청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2년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 참고사항
 - ①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
 - 2 공익활동보고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을 작성

□ 공익법인 지정요건

-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 확인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④ 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만 해당)
 -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
 - ④ 공익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 ⑤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②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5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舊성실공익법인 확인제)

- □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제 개요
- '22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¹⁾은 매년 관련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²⁾됨
 - 1)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상증령 §41의2)
 - 2) (기존) 국세청이 5년마다 요건 확인 → (개정) 공익법인이 매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

- 동일기업 주식: (요건 미충족 시) 지분율 5% > (충족 시) 지분율 10% 또는 20%*
 - *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 계열기업 주식: (요건 미충족 시) 총재산가액의 30%(50%*) > (충족 시) 제한 없음
 -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50% 적용

□ 개정내용

구분	성실공익법인 확인	의무이행 신고	
개요	■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 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 을 받아야 함	■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 게 신고해야 함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①~ ④ 좌동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의무* 추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 법인을 광고·홍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0.73	보 금지	
요건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⑤~⑧은 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 요
	⑦ 결산서류 공시	건은 아니지만, 공익유형 및 규모와
	⑧ 장부 작성·비치	관계없이 이행해야 함
		_ ▶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요건 미충족시)	■ (요건 미충족시)
제재	- 주식 5%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주식 5%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총재산가액 30%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	- 총재산가액 30%초과 보유시 가산세
	과	부과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6 주요 세법개정 내용

- □ 공익법인 의무이행기간 합리화
- · (개정내용) 출연재산보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서 4월로 연장
- ∘ (적용시기) '22.1.1. 이후 의무이행 하는 분부터

법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 43	 3.31.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4.30. 이내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3.31. → 4.30. 이내(좌동)

- □ 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 (개정내용) 모든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⑤	o 일반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o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ㅇ 모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 (개정내용) 총자산가액 중 공익법인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가액은 직전 3개년도 자산가 액 평균으로 산정
-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o 출연재산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 상태표 상 자산가액 < 단서 신설 >	o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동)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 우 최근 3개년도 평균가액

-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개정내용)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증여세 추가 과세
-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호연재산가액 의무사용 비율 주식 10% 초과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이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좌 동) 이 위반시 제재 강화 - 3% 미달사용시: 미달사용액×10% - 1% 미달사용시: ⓐ+ⓑ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 (개정내용)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경0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6	<신설>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 대상 ※ '22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절차 지정자료 제출(~3.14.) → 감사인지정 및 사전통지(~4.18.) → 의견제출(~5.2.) → 감사인통지(~5.16.) → 재지정 요청(~5.30.)

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하여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 □ 기본사항
- 사단법인□□□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 같은법 시행령 § 38
-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
- □ 의무위반 내용



사단법인 □□□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상태로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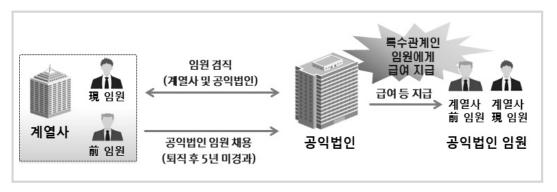
- □ 조치사항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2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 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 지출

- □ 기본사항
- □□□재단, □□□계열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⑧, § 78⑥, 같은법 시행령 § 38⑪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①
 -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



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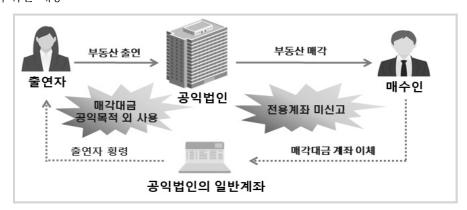
◦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00억 원 추징

사례 3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

- □ 기본사항
- □□□재단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0의2 § 48②4, 같은법 시행령 § 43의4
- (전용계좌 신고의무)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의 0.5%('21.12.21. 개정전)
 - ① 공익수입금액 총액 ② 전용계좌 대상거래금액 합계
- ·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이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의무위반 내용



-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계좌로 수령
-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가 횡령하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함

□ 조치사항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하여 가산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 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2. 3

[심사·감리 결과]

- ① (실적) 금융감독원이 '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표본 103사, 혐의 49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전년 대비 29사(23.6%) 증가
-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 (83사 조치)로 전년(66.4%) 대비 11.8%p 감소(표본 심사·감리 34.0%, 혐의 98.0%)
- ③ (위반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72.3%(60사)로 상당 부분을 차지
 - * A유형 지적률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 ④ (위반동기) 고의(14.5%) 및 중과실(10.8%) 비율이 25.3%로 감소하는 추세*
 -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 → 28.2%('20년) → 25.3%('21년)
- ⑤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 하였고, 회계법인 30사, 공인회계사 68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 상장회사 과징금 추이 : 49.8억원('19년)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시사점]

-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 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 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 욱 노력할 필요

분석대상

- □ 금융감독원이 '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52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사, 코스닥시장 94사, 코넥스시장 4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 (123사) 대비 29사(23.6%) 증가

< 최근 3년간 심사 감리 상장회사수 >

(단위: 사, %)

구 분	'19년 '20년	FIOCI	'21년	'20년 대비	
		20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89	79	103	24	30.4
혐의 심사·감리	50	44	49	5	11.4
합 계	139	123	152	29	23.6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 (재무제표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 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 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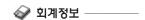
- □ (전체)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78사) 보다 5사 증가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54사 중 57.4% 지적), 그 외 시장(코스 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98사 중 53.1% 지적)
- □ (지적률) '21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 대비 11.8%p 하락
 -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1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52사)
 -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78사 → 83사, 5사↑) 대비 표본 심사·감리 건의 큰폭 증가(79사 → 103사, 24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 → 44.3%('20년) → 34.0%('21년)
 -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78.0%('19년) → 97.7%('20년) → 98.0%('21년)

<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

(단위: 사.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43	35	35	-
	지적률	48.3	44.3	34.0	△10.3
혐의	회사수(위반)	39	43	48	5
	지적률	78.0	97.7	98.0	0.3
합 계	회사수(위반)	82	78	83	5
	지적률	59.0	63.4	54.6	△8.8

-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43.6%(전체 39사 중 17사 지적), 테마는 23.9%(전체 46사 중 11사 지적), 무작위는 36.8%(전체 19사 중 7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 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3.7%) > 무작위(39.4%) > 테마(37.1%) 순



※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①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② 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③ 무 작 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 표본 심사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 >

(단위: 사,%)

표본 선정방법		'19년	'20년	'21년	3년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19	17 21		57
기심포고	지적률	45.2	72.4	43.6	53.7
בווחו	회사수(위반)	12	9	11	32
데마	지적률	63.2	24.3	23.9	37.1
무작위	회사수(위반)	12	5	7	24
무작위	지적률	42.9	38.5	36.8	39.4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위법행위 유형별

-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 사는 60사(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사, 80.8%) 대비 3사(8.5%p) 감소
 -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75.6%('19년) → 80.8%('20년) → 72.3%('21년)
 -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
 -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4사('19년) → 15사('20년) → 23사('21년)

※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 ①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 ②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 (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③ C유형: 위법행위가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④ D유형: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 \sim C유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위법행위 유형별 시적 현황 >

(단위: 사, %)

위반유형		'19년 '20년		'21년	3년기준**
A	회사수(위반)	62	63	60	185
유형*	지적률	75.6	80.8	72.3	76.2
기타	회사수(위반)	20	15	23	58
기닥 	지적률	24.4	19.2	27.7	23.8

- * 지적유형이 A유형과 기타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회사는 A유형으로 분류
- ** 유형별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 (위반건수 분포) '21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50건(평균** 1.8건)
 -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 '21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50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사
 -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21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9사	28사	10사	5사	1사	83사

위법행위 동기별

- □ (고의 · 중과실) '21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 (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 전년(14사, 17.9%) 대비 2사(3.4%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 → 28.2%('20년) → 25.3%('21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67.1%('19년) → 71.8%('20년) → 74.7%('21년)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2022 · 03 · 30 www.eAn\$e,com 37

<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

(단위: 사, %)

위법행위 동기		'19년	'20년	'21년	3년 기준*
70	회사수(위반)	7	14	12	33
고의	비율	8.5	17.9	14.5	13.6
즈 키 시	회사수(위반)	20	8	9	37
중과실	비율	24.4	10.3	10.8	15.2
과실	회사수(위반)	55	56	62	173
五/5	비율	67.1	71.8	74.7	71.2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비율은 각 연도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

과징금 등 조치

-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49.8억원('19년)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2.2억원('19년)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ㅇ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사, 억원)

과징금	'19년	'20년	'21년
부과 회사 수	23	17	14
부과 금액	49.8	94.6	159.7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2.2	5.6	11.4

□ (수사기관 통보 등) '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 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1년도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

- * '21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87건('19년) → 37건('20년) → 30건('21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 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한편,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 *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감소
 -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25.3%('19년) → 35.1%('20년) → 33.3%('21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당년에 그 부과금액이 증가*
 -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 8.4억원('21년)
- □ (공인회계사) '21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 회계사는 총 68명
 - 이는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95명) 대비 27명(28.4%) 감소

< 상장회사 감시관련 회계법인 >

(단위: 사, 명, %)

¬ ⊢	11013	1001=	10113	'20)년 대비
구 분 -	'19년	'20년	'21년	증감	증감률(%)
회계법인	87	37	30	△7	△18.9
공인회계사	177	95	68	△27	△28.4
법인당 평균	2.03	2.57	2.27	0.30	△11.7

※ 회계법인은 조치 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 수 기준

Ⅲ 시사점

①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 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에 더욱 노력할 필요
 -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8.3%('19년) → 44.3%('20년) → 34.0%('21년)
 -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32.9%('19년) → 28.2%('20년) → 25.3%('21년)

② 중대 위반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2022 · 03 · 30 www.eAn\$e,com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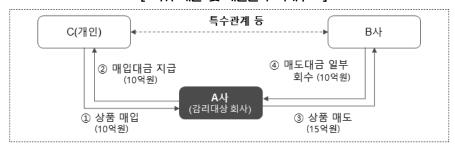
-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중조치 건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등을 강화 할 필요
 - *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49.8억원('19년)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③ 기업 리스크를 고려한 감사수행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필요
 - '과실'인 경조치 건의 심사종결로 감사인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감사절차 소홀 ·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바, 감사인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 행할 필요
 - →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누락·소홀이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참고 - 감리결과 지적사례

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C(개인)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B 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및 10억원 허위계상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 거래구조]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조치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지적내용)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B사는 자회사가 진행중 인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비용 발생문제 등 중요한 불확실성 및 대여금의 사적 유용 등을 고 려하지 않는 등

손상징후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상 투자관련계정(관계기업투자자산, 기타금융자산)을 과대계상

- * 손상관련 주요 위반사례 : ① 내용연수가 무한하거나 비사용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매년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② 손상징후 검토시 외부정보원천(시장이자율 등) 및 내부정보 원천(진부화 등)을 미고려 ③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할인율로 세전할인율 미적용 등
- □ (조치내용) 증선위는 B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

3 위탁매출 회계처리 오류

□ (지적내용) 기업회계기준서의 위탁약정에 따르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중개인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인도한 제품을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C사는 미국 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판매계약이 위탁약정에 해당하여 최종 판매시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미국법인에 인도한 시점에 인도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과소)계상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에 주의 조치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l8일(금)	3월	2 일(월)	3월	22일(화)	3월	23일(수)	3월	24일(목)
	달		러 (USD)		1220.60		1211.10		1213.70		1221.40		1212.70
일	본		엔 (JPY)		1029.8		1015.38		1015.10		1007.71		1001.61
영	국 파	운	드 (GBP)		1605.46		1595.02		1597.96		1620.68		1601.19
711	나 다	달	러 (CAD)		966.54		961.08		963.83		972.03		964.87
홍	콩	글	러 (HKD)		156.13		154.79		155.10		156.05		155.00
위	안		화 (CNH)		192.05		190.50		190.32		191.59		190.01
유	로		화 (EUR)		1353.65		1337.78		1337.38		1347.75		1334.58
호	주 [글 글	러 (AUD)		900.13		897.30		898.14		912.87		908.86
싱	가 폴	달	러 (SGD)		901.68		893.21		893.77		900.31		893.04
말리	베이시아	링7	트 (MYR)		290.93		288.84		288.63		289.67		287.10

2022 · 03 · 30 www.eAnSe.com 41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 2022. 3

주요 내용

-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됩니다.
 -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됩니다.
 - 2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됩니다.
 - 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 배경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 '17.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 금년('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어 동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65사(計)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의무화 일정>

구 분	대상(자산기준)	보고서 제출 기업수주)
'19~'21년	2조원 이상	175
'22년	1조원 이상	265 (+90 예상)
'24년	5천억원 이상	406 (+231 예상)
'26년	全코스피 상장회사	733 (+558 예상)

주) 금융회사, 투자회사 등 제외('20년 결산 기준)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
-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거래소 공시규정 근거)
-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Ⅱ 주요내용

1.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 □ (물적분할 개요) 물적분할이란 모(母)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된 자(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입니다.
 -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의 발행 신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취득하므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수평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
-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다는 의견)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없이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
- (비판의견)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 "핵심사업"부문이 자회사로 분리·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

2022 · 03 · 30 www.eAn\$e,com 43

- □ (개선방안)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원칙을 신설했습니다.
 - *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 (원칙 신설)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상기 원칙에 따라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 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하여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합니다.
 - (기재 사항)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 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
 - 또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 주주와의 대화 내용 기재시 소액주주 관련 사항을 별도로 기재
- □ (기대효과)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 (예시) (1) 소액주주와의 간담회 개최, (2)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절차 엄격화, (3)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보호 방안 추가 검토
 - □ 최근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 * (예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시 기업의 주주와의 소통 노력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 등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 □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9 제3항 등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 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만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음(상법 제542조의 11, 동법 시행령 제37조)
-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4. 기타 정비사항

□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2022 · 03 · 30 www.eAnSe.com 45

-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
- □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공시 정보의 활용성을 높혔습니다.
 -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추가 → 투자 정보 활용도 제고 및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Ⅲ 향후 계획

- □ (적용)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 '21.11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시한은 5월 31일로 통일(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 (교육)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2.3월 ~ 4월).
-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규기업 전용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기업별 전담 컨설팅 인력을 배정하여 보고서 작성을 안내
- □ (점검) 금년 하반기중(6~9월 예정),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시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장려하겠습니다.
 - * 우수공시 선정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의 혜택 부여
-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 인 지정, 벌점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참고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 □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 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 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 (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
 - *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 G20/OECD 기업지배구 조 원칙 등에서 제시한 10가지 주요 원칙
- □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 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업 단계적 확대 추진 : ('19년)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
 -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 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 *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고, 상장 법인은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함(거래소 유가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 □ (제재)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불응 →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 요구가능('21년 정정공시 요구 20건)
 - ** 공시불이행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제재가 가능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의 후속조치 가능

2022 · 03 · 30 www.eAnSe.com 47

참고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공시항목 예시

핵심원칙	공시항목 예시
① 주주 권리의 보장	▶ 주총소집 통보·안건 제공일(주총 4주前)▶ 주총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배당성향 및 배당계획
②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 IR·기관투자자와의 대화 실적, 공시의무 위반 이력 ▶ 영문홈페이지 운영여부, 영문공시 실적 ▶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 주주 등과의 자기거 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 ▶ 사업 및 소유구조 중대 변화시 주주의 이익보호 정책
③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 내부통제정책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공시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④ 이사회 전문성, 독립 성	 ▶ 각 이사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여부
⑤ 사외이사의 독립성	▶ 과거 해당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6년이상) 현황▶ 사외이사 겸직 현황
⑥ 사외이사에 대한 평 가 및 보상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정책 ▶ 사외이사 보수정책(주식매수선택권 등 포함) ▶ 평가결과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반영 여부
⑦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 개별 이사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등 주요 활동 내용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설치 현황
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 적 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	 ▶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선임 현황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요건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제공 등 지원현황 ▶ 정기적 회의개최 여부
⑩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기여	▶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 실태